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정부 및 정당(안) 비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함. 정부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이원화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 대상이나 기준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음. 반면, 2016년 야당들이 제기한 법안들은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언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인 타당성은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 포착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민주당의 별도 기준, 국민의 당의 기본보험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임.

- 정부는 2017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¹⁾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 본고는 금번 정부(안)을 이미 발표된 더불어민주당(2016. 6, 이하 ‘민주당(안)’), 국민의 당(2016. 10, 이하 ‘국민의 당(안)’)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정부(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사이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부과 기준을 3단계에 걸쳐 통일하여 상호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²⁾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보수 이외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기준을 연간 7200만 원 초과분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분으로 변경³⁾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1) 불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동일한 경제 여건을 가진 가입자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서 비롯됨. 예를 들어, 동일 소득-동일 재산이어도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함. 또한 피부양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 납부 자격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음.
2) 정부(안)은 3단계가 적용되는 때(2024년)의 내용으로 설명함.
3) 적용 보험료율도 3.06%에서 6.12%로 상향 조정함.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 일정액(5000만 원)의 공제를 신설하고, 중저가자동차(4000만 원 미만)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적용 대상 재산을 축소함.
- 연소득 5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함.⁴⁾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요건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종합과세소득 기준 2000만 원)과 재산 기준(3.6억 원)을 엄격하게 하여 적용 대상을 축소함.⁵⁾

■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가입자를 구분하느냐 여부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에 있음(〈표 1〉 참조).

- 정부(안)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하였으나, 야당(안)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자체를 폐지하여 부과 방식을 일원화함.
-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야당(안)은 연금, 분리과세 대상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⁶⁾

〈표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비교

구분	정부(안) - 3단계 기준	민주당(안)	국민의 당(안)
기본체계	직장-지역 가입자의 이원화된 체계	소득 단일 기준 적용 + 최소보험료	소득 단일 기준 적용 + 기본보험료
직장 가입자	근로소득 종합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통합 - 부과 대상 소득: 모든 소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보험료+최저보험료 -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보험료 주 ¹⁾ *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통합 - 부과 대상 소득: 모든 소득 (양도, 퇴직, 상속, 증여 제외)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보험료와 기본보험료 중 큰 금액 -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보험료 적용 주 ²⁾
피부양자	종합소득과세 (2000만 원 초과)		
지역 가입자	- 평가소득(연 500만 원 이하 적용) 폐지 - 최저보험료(연 336만 원 이하) 적용 - 재산, 자동차 보험료 공제 확대 및 부과 대상 축소 - 재산에 대한 보험료		
재정 지원	별도 언급 없음	재정 지원 20%로 확대	재정 지원 20%로 확대 * 재정 균형 방식 도입

주: 1) 최저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개편안의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음.

2) 기본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현행 재산 보험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보험료와 기본보험료 중 큰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7. 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방안」, 더불어 민주당(2016. 6),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세부 개편방안」, 국민의 당 보도자료(2016. 10. 3).

- 4)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을 재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재산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중복 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5) 현재 피부양자 적용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금융, 연금, 근로+기타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재산 기준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 6) 민주당(안)은 양도, 퇴직,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국민의 당(안)은 이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야당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음.

■ 야당(안)은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타당성은 지역 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⁷⁾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원화는 무리라고 판단함.
- 야당(안)은 보험료 부과 기준을 기본적으로 일원화하고,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보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당(안)의 ‘별도 기준’이나 국민의 당(안)의 ‘기본보험료’가 얼마나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포착률을 보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일원화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결정될 것임.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보험료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종합소득, 연금, 분리과세 소득에 적용되는 정부의 예외 조건은 축소되어 갈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양도, 퇴직, 상속, 증여 소득 등은 현실적인 발생 빈도와 소득의 성격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임.
- 반면,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를 통해 일부 계층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상한선⁸⁾을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⁹⁾ **kiri**

7) 소득이 정확하게 조세당국에 신고되는 비율.

8)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239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228만 원임.

9) 민주당(안)도 우리나라의 최저-최고 보험료의 차이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과 사회 연대의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계층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험료 상한선을 적절히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